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익조정 사례연구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중심으로 -

송 인 만\*  
박 연 희\*\*  
박 성 진\*\*\*

K-IFRS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최대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1년 전면적으로 K-IFRS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K-IFRS 도입에 의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는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자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 보다 금융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미실현이익의 발생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자산 대비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등이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회계처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K-IFRS 1109호가 1039호에 비해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K-IFRS 1039호에서 K-IFRS 1109호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에 평가증한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분식회계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FRS 1109호의 도입은 배당금의 기타포괄손익인식의 타당성,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 재분류조정, 비교가능성과 복잡성 등의 회계상의 쟁점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 이익조정행위

### 1. 서론

최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라고 함)의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IFRS를 도입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IFRS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번역하고 불필요한 경과규정 등을 삭제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고 함)이라고 부른다. K-IFRS는 2011년부터 모든 국내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에서나 실무에서 K-IFRS 도입이 국내 기업

논문접수일: 2012. 06. 27. 1차 수정본 접수일: 2012. 09. 14. 게재확정일: 2012. 10. 03.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imsong@skku.edu), 제1저자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상업정보교육과 부교수(parkyh@kongju.ac.kr),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gangclub2@hanmail.net), 공동저자

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또는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들이 없다. 특히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은 일반 기업들과 다르기 때문에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및 효과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연구들이 수행될 때, 표본의 이질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제외하거나 별도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써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K-IFRS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기도 하다. K-IFRS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재무제표에 있는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따를 경우 기존의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에서 원칙주의 회계기준으로,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정가치회계의 확대 등과 같은 주요 회계기준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특히 공정가치 정보와 관련해서 수행된 연구들은 공정가치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주가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나(Barth 1994, Danbolt and Rees 2007), 다른 연구들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자의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Wyatt 1991 등).

2011년부터 전면 도입한 현행 K-IFRS의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회계에 대한 현재 기준서는 1039호를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 이 기준서는 1109호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자산(구체적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K-IFRS 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단기매매금융상품, 공정가치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지정한 금융상품)에서 나타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지만,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는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자의적으로 처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익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K-IFRS 1039호와 1109호를 비교함으로써 기준서 1109호가 기준서 1039호에 비해서 이익조정이 억제될 수 있는 지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기준서 1109호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공시된 재무제표(기준서 1039호)를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몇 개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들 사례들은 기준서 1109호가 이전 규정에 비해서 이익조정이 억제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sup>1)</sup> 본 사례연구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은행이 제조업에 비해서 금융상품의 거래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장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공정가치의 평가 현황과 국내 시중은행의 사례를 제시하고, V장에서는 현행 규정(기준서 1039호)의 문제점과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

1)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K-GAAP과 K-IFRS 1039호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K-GAAP을 K-IFRS 1039호로 변경하더라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및 처분손익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대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공정가치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공정가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Barth 1994, Danbolt and Rees 2007, 송인만 등 2000, 김상철 등 2002)와 금융상품의 처분에 의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Wyatt 1991, Lee et al. 2006, 권수영 등1998, 지현미와 송인만 2009; 김문태와 김현아 2011; 백원선과 최길엽 2011)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정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은 공정가치 정보가 역사적원가 등의 정보보다 주가를 더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공정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 대표적인 연구로 Barth(1994)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인 장부가액에 비해 증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치정보는 역사적 원가에 비해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의 정보이용자는 취득원가보다는 공정가치의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현된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이 미실현된 유가증권의 처분손익보다 주가배수로 측정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익 중 실현 또는 미실현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anbolt and Rees(2007)는 영국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가치와 역사적원가에 대한 가치적합성, 신뢰성 및 편의성 측면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들은 영국의 부동산투자회사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보다 더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들의 예상과 같

이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순이익이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당기순이익보다 가치적합성, 신뢰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자료를 이용한 공정가치의 정보유용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송인만 등(2000)의 연구가 있다. 송인만 등(2000)은 주식으로만 공시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정보가 주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주식으로만 공시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정보는 주가에 증분적인 설명력이 있었으며 주가수익률을 설명함에 있어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증분적인 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만 등(2000)의 연구와 유사하게 김상철 등(2002)도 유가증권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간의 주가배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단기매매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간에 유의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간에 유의한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공정가치로 측정된 정보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반영하는 재무정보로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의 처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밝힌 Wyatt(1991)는 자의적으로 매매이익이 발생하는 유가증권만을 선별하여 처분하고 매매손실이 발생하는 유가증권은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즉, 경영자들이 자산처분의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다른 연구로 Lee et al. (2006)은 유가증권의 선별적인 처분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기보다는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경향이 강하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자본변동표에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의 존재를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자본변동표 보다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포괄손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경영자는 투자자의 관심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손익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또한 공시품질이 높을수록 포괄손익은 자본변동표 보다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것을 통해 포괄손익의 표시방법이 금융상품의 이익조정과 공시품질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금융상품의 자의적인 거래시점을 통한 이익조정을 검증한 국내연구로 권수영 등(1998)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주식의 운용이 왜곡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증권회사들은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종목은 매각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왜곡된 주식 운용행태가 존재함을 보였다. 또한 지현미와 송인만(2009)은 평가손익이 발생한 특정한 매도가능증권을 선별적으로 처분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증하였다. 평가손익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은 외부감사 시 지적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도 낮아 다른 이익조정수단에 비해 경영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영자는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으로 보고이익을 조정하며 이러한 이익조정은 만기보유증권, 유·무형자산, 리스자산 등의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문태와 김현아(2011)는 경영자가 매도가능증권의 선택적 처분을 통한 이익거래로 이익관리를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영자는 매도가능증권의 선택적 처분을 통하여 이익의 상향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의 이익거래가 발생행목을 이용한 순이익의 상향조정과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마지

막으로 백원선과 최길엽(2011)은 경영자가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기회주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이익 상향 유인이 존재하는 기업은 전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의 증가분이 클수록 유가증권처분손익을 크게 계상하여 이익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경영자들은 자의적인 거래의 선택을 통해 이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외부감사과정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낮고 거래비용이 적은 금융상품을 선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통해 손쉽게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I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2011년부터 K-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금융자산에 관한 기준서는 1039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IFRS 1039호는 여전히 이익조정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1109호를 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향후 이 기준서는 2015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K-IFRS의 1039호와 1109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을 간단명료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 3.1 기준서 1039호

K-IFRS 1039호에서의 금융자산이란 현금과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크게 현금 및 현금성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을 말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의미하며 기타금융자산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등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을 나타내며 세부적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한편, 이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변동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측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sup>2)</sup>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데 이때 처분금액은 매각대금에서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이란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을 말한다.<sup>3)</sup>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상품을 의미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즉,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자산이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처분 일에 재측정된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K-IFRS 1039호에서 분류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말한다.

지분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후속적으로 지분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sup>4)</sup> 한편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평가손익을 재분류조정을 통해 당기손익(금융자산처분이익)에 반영한다.

채무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은 만기보유금융자산과 지분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동일하다. 다만,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 또한 채무상품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본항목에 계상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을 재분류조정을 통하여 당기손익(금융자산처분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2) 공정가치는 처분부대원가, 즉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3)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첫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둘째,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셋째,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등이다.  
 4)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 3.2 기준서 1109호

기준서 1109호의 금융자산 정의는 기준서 1039호와 유사하다. 즉,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다만, K-IFRS 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서 1039호의 금융자산 분류(현금 및 현금성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기타금융자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금융상품을 말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기준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취채권, 만기보유목적의 채무상품(국공채, 회사채 등)을 말한다. 또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기준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적 시세차익목적의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등)과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지분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K-IFRS 1109호에 의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즉,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되어야 한다.<sup>5)</sup>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즉,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는 자산이며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이 아니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였으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 제거일에 재측정된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K-IFRS 1109호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 1109호에 의하면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기준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는 다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sup>6)</sup>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

5)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크게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취채권, 채무상품(국공채, 회사채 등) 등이 있다.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으로써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과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인 경우에 한하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며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겠다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경우 인식되는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의 취소불가능한 선택은 지분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상품이 아닌 채무상품 등에 대해서는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취소불가능한 선택은 지분상품별로 이루어지며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기타포괄손익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정하며 공정가치변동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측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 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sup>7)</sup> 또한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으며 공정가치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채무상품인 경우에는 먼저 처분시점까지 이자수익을 인식한 후에 직전 이자지급일의 장부금액에 처분 일까지의 이자수익을 합한 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 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 취득시점 이후의 공정가치측정에 의하여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은 처분 시에도 제거되지 않고 계속 자본항목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본의 분류 내에서 이익잉여금 등으로는 대체할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기준서 1039호와 1109호 두 규정상의 회계처리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즉, 기준서 1109호에 의하면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먼저 처

분시점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공정가치변동분을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한 후 처분에 따른 금융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매각대금)에서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각수수료만큼 금융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경영자의 행위가 기준서 1109호에 의하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표 3-1>은 금융상품의 분류, 평가 및 처분과 관련된 K-IFRS 제1039호와 제1109호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 IV. 국내 금융기관의 공정가치 평가 현황

### 4.1 송인만·노형식의 보고서(2011. 3)

송인만·노형식(2011)의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국내은행의 회계담당부서로부터 유가증권의 분류 및 시가평가,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시가평가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여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회계기준의 적절성과 시사점 등을 얻고자 수행하였다.

송인만·노형식의 보고서(2011)에서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관한 회계기준에 대한 의견,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에 대한 의견, 대손충당금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및

7) 공정가치 평가기법에는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이 있다.

〈표 3-1〉 금융상품과 관련된 K-IFRS 기준서별 주요한 차이점

구분	K-IFRS	
	기준서 1039호	기준서 1109호
분류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평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당기손익에 반영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처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 <b>-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b> -만기보유금융자산: 발생하지 않음 -대여금 및 수취처분: 발생하지 않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발생하지 않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 <b>-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발생하지 않음</b>
효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통한 이익조정 가능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통한 이익조정 불가

처분손익 규모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만들었다. 이들의 설문조사에 관한 결과는 본 사례연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발췌하여 제시하였다.<sup>8)</sup>

이들의 설문결과는 첫째, 시가평가가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시가 평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국내은행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셋째, 국내은행들은 시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며 유가증권의 분류와 손상차손의 인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중립적으로 평가하거나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넷째, 부채의 시가평가는 원하지 않으나 시가평가를 한다면 평가손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섯째, 유가증권 분류에 따른 자유재량 여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서 상당한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에 반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가능금융

자산의 처분에서 처분이익(당기손익에 반영)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제기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위의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국내은행이 시가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상외로 시가를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옵션을 택할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시가평가에 대한 외부평가 의존도가 감소하거나 시가평가 대상 자산이 증가할 경우 시가평가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즉, 이들은 금융기관 자체의 공정가치 평가 능력 제고와 신뢰성 있는 외부평가 인프라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에서 나타나는 손익의 전환 혹은 처분이익의 상대적 크기 증가가 이

8) 송인만·노형식(2011. 3)의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으로 시중 7, 지방 6, 그리고 특수 5의 은행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고, 의뢰한 전체 대상은행으로 부터 약 66.7%의 응답을 받았다.

이익조정 행위에서 초래된 결과일 경우,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회계처리의 장점이 훼손되는 부분이므로 점검 및 보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 4.2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손익현황

아래의 <표 4-1>는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에서 4대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말하며 기타 은행은 외환,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으로 특수은행 5곳(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은행)은 제외하였다.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말 현재 국내 은행이 보유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자산 대비 비중은 각각 1.3%, 10.4%로 2008년(단기매매증권: 1.3%, 매도가능증권: 9.0%)과 2009년(단기매매증권: 1.4%, 매도가능증권: 10.1%)에 비해 증가하였다. 4대 은행의 경우에는 2010년의

단기매매증권의 비중이 1.6%로 2008년(1.5%)에 비해서는 높으나 2009년도(1.7%)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2010년도 매도가능증권의 자산 대비 비중(9.4%)은 2008년(8.4%)과 2009년(8.9%)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기타 은행의 경우에는 2010년의 단기매매증권의 비중(0.5%)이 2008년(0.8%)과 2009년(0.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도가능증권의 비중(12.8%)은 2008년(10.3%)보다는 높으나 2009년(13.1%)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및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4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비중(-105.5%)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도가능증권은 2009년과 2010년에 당기순이익에 대비하여 49.6%, 41.7%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이 동일한 기간 동안

<표 4-1> 은행의 금융상품 보유 및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구분	4대 은행			기타 은행			전체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b>자산 대비</b>									
단기매매증권	1.5	1.7	1.6	0.8	0.7	0.5	1.3	1.4	1.3
매도가능증권	8.4	8.9	9.4	10.3	13.1	12.8	9.0	10.1	10.4
<b>당기순이익 대비</b>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4.6	-2.2	1.1	2.6	1.0	0.5	3.8	-0.7	0.9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3.4	4.6	4.7	0.4	3.9	4.2	-1.9	4.2	4.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105.5	100.8	2.0	-20.9	18.5	0.3	-71.8	61.6	1.4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2.0	49.6	41.7	7.8	24.6	26.0	1.9	37.7	35.9

(주1) 손익은 영업수익 항목의 이익에서 영업비용 항목의 손실을 차감한 값

(주2)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은 영업수익의 항목

(주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당해 연도의 변동치

(주4) 4대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주5) 기타 은행: 외환,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각각 4.6%와 4.7%가 발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각각 4.6%, -2.2%, 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처분손익은 각각 -3.4%, 4.6%, 4.7%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단기매매증권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손익도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하여 2008년과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대규모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2009년도에는 정반대로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을 경험하였다. 또한 매도가능증권은 2008년에 평가손익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손익에서 소폭의 적자만을 기록하였다. 특히, 평가손실 규모가 컸던 2008년에는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 대비 -105.5%였으나 처분손실은 당기순이익 대비 -3.4%에 불과하였다. 또한 2009년과 2010년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모두 이익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매도가능증권의 보유 규모가 자산대비로 비교적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등이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4.3 국내 시중은행의 사례

#### 4.3.1 주식회사 국민은행

##### (1) 기업의 개요

국민은행은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제공을 목적으로 1963년에 국민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에 공포·시행된 '국민은행법폐지법률'에 따라 은행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였다. 국민은행은 1994년 9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8년 9월 29일자로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국민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본점과 1,173개의 국내지점 및 6개의 해외지점(현지법인 3개, 사무소 2개 제외)을 운영하고 있다.

##### (2)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방법

국민은행은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에 시장성 유무, 취득목적 및 보유능력 등에 따라 과목을 구분하고 있는 바,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상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이에 종목별 이동평균법(채무증권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권의 경우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으로 하고 동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이에 종목별 이동평균법(채무증권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권의 경우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로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분증권의 경우 공정가액(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자산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순자산)이 취득원가에 미달하고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증권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항목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권의 경우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고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항목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미실현보유손실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 있는 경우 미실현보유손실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제거하여 먼저 손상차손에 반영하고, 당해

유가증권과 관련한 미실현보유이익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미실현보유이익 전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제거하여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다.

만기보유증권의 취득원가를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이에 개별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다. 한편, 채무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원가에 미달하고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 (3) 유가증권의 보유현황 및 처분손익

다음의 <표 4-2>은 국민은행의 금융상품 보유현황과 처분손익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 1>에서 국민은행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크게 4가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증권 2010년(2009년)의 보유금액을 비교하면 단기매매증권이 946,916백만원(2,995,158백만원), 매도가능증권은 23,789,614백만원(22,625,602백만원), 만기보유증권이 13,032,299백만원(12,537,114백만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818,210백만원(814,416백만원)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중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만기보유증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널 2>에서 2010년(2009년)의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처분이익을 살펴보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 4,129백만원(7,662백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

〈표 4-2〉 유가증권 보유현황 및 처분손익

〈패널 1〉 유가증권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단기매매증권	946,916	2,995,158
매도가능증권	23,789,614	22,625,602
만기보유증권	13,032,299	12,537,1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18,210	814,416
계	38,587,039	38,972,290

〈패널 2〉 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4,129	7,662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8,766	125,01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49,274	294,450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3,285

〈패널 3〉 평가 및 처분손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545	14,403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46,149	96,054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24	61,703

이익은 108,766백만원(125,011백만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149,274백만원(294,450백만원),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은 0원(3,285백만원)이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이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이익보다 더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패널 3〉에서 유가증권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의 2010년(2009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 545백만원(14,403백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은 46,149백만원(96,054백만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은 424백만원(61,70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비해 처분손실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2010년을 기준

으로 했을 때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149,274백만원이었지만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은 424백만원으로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국민은행이 과거에 평가이익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을 주로 처분함에 따라 처분손실에 비해 처분이익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은행의 경우에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유가증권의 처분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즉, 단기매매증권과는 다르게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익이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미 평가이익이 발생한 특정 매도가능증권을 선별적으로 처분(cherry-picking)하고 매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2010년 재무제표는 K-GAAP에 의한 것이며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K-IFRS 1039호를 적용하더라도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준서 1109호는 향후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전에 두 기준서를 비교함으로써 기준서 1109호가 현행 기준서(K-IFRS 1039호)와 비교해서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표 4-3>는 2010년도 국민은행의 매도가능증권을 현행의 K-IFRS 1039호에서 1109호로 변경할 경우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만 있고 지분상품의 처분으로 인한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표 4-3>는 국민은행의 총포괄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총포괄이익은 K-IFRS 1039호와 1109호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111,484백만원으로 동일함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K-IFRS 1039호를 적용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49,274백만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24백만원을 합한 148,850백만원이 되며 기타포괄손익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과거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7,366백만원이 재분류조정에 의해 기타포괄손익에서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즉, 당기순이익 148,850백만원과 기타포괄손익  $\Delta$ 37,366백만원으로 총포괄이익은 111,484백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K-IFRS 1109호를 적용할 경우 과거에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면서 발생한 평가손익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조정을 하지 않고 처분시점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은 0의 값을 가지며 기타포괄손익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111,484백만원이 발생하여 총포괄이익은 111,484백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K-IFRS 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가 K-IFRS 1039호를 적용했을 때와는 달리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에 의해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2 주식회사 우리은행

##### (1) 기업의 개요

우리은행은 1899년에 설립되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1년 3월 27일자로 설립된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가 은행주식 전부를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의 최대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전받았으며 국내에 905개의 지점 및 출장소와 해

<표 4-3> 기준 변경 시(기준서 1039호에서 1109호)의 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K-IFRS 1039호	K-IFRS 1109호
당기순이익	148,850	-
①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49,274	-
②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24)	-
기타포괄손익	(37,366)	111,48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7,366)	111,484
총포괄이익	111,484	111,484

외에 17개의 지점 및 사무소를 두고 영업 중이다.

### (2)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방법

우리은행은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에 시장성유무, 취득목적 및 보유능력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바,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상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하여 각각 종목별 이동평균법과 개별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권의 경우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보고기간 종료일 가액으로 하고 동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하여 각각 종목별 이동평균법과 개별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권의 경우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다.

한편,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채무증권의 경우 상각후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

을 보고기간 종료일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동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가액으로 하고 있다.

만기보유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개별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다. 한편, 만기보유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원가에 미달하고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 (3) 유가증권의 보유현황 및 처분손익

다음의 <표 4-4>은 우리은행의 금융상품 보유현황과 처분손익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은행도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패널 1>에서 우리은행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각 증권의 2010년(2009년)의 보유금액을 비교하면 단기매매증권이 6,234,713백만원(6,931,553백만원), 매도가능증권은 12,576,159백만원(9,644,323백만원), 만기보유증권이 15,777,226백만원(12,380,304백만원), 그리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1,337,694백만원(1,278,870백만원)이었다.

〈표 4-4〉 유가증권 보유현황 및 처분손익

〈패널 1〉: 유가증권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단기매매증권	6,234,713	6,931,553
매도가능증권	12,576,159	9,644,323
만기보유증권	15,777,226	12,380,30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337,694	1,278,870
계	35,925,792	30,235,050

〈패널 2〉: 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5,894	27,615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17,870	101,768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37,218	688,767

〈패널 3〉: 평가 및 처분손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173	54,778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37,488	55,31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8,802	115,966

우리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중 만기보유증권의 비중이 유가증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순으로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널 2〉에서 2010년(2009년)의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처분이익을 살펴보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55,894백만원(27,615백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은 117,870백만원(101,768백만원),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37,218백만원(688,767백만원)이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이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이익보다 약 6~7배 정도 더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패널 3〉에서 유가증권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의 2010년(2009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단기매매

증권평가손실은 1,173백만원(54,778백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은 37,488백만원(55,778백만원),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이 8,802백만원(115,96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국민은행과 유사하게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비해 처분손실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2010년을 기준으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837,218백만원이었는데 반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은 8,802백만원으로 이익이 손실에 비해 약 9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은행이 주로 과거에 평가이익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을 대상으로 처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은행도 국민은행

과 유사하게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유가증권의 처분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이익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2010년 기준으로 처분이익(117,870백만원)이 처분손실(37,488백만원)에 비해 약 3배 정도 큰 것에 비해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처분이익(837,218백만원)이 처분손실(8,802백만원)에 비해 약 9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영자는 평가이익이 발생한 특정 매도가능증권을 선별적으로 처분(cherry-picking)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2010년도 매도가능증권을 현행의 K-IFRS 1039호에서 1109호로 변경할 경우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9)</sup> <표 4-5>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준서 1039호에서 1109호로 변경했을 경우를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은행도 국민은행과 동일하게 K-IFRS 1039호를 적용하는 경우와 K-IFRS 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 총포괄이익은 379,068백만원으로 동일하게 된다. 우리은행이 K-IFRS 1039호를 적용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828,416백만원으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837,218백만원과 처분손실 8,802백만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에는 과거에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면서 발생한 평가이익 449,348백만원이 처분으로 인하여 재분류조정예의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은행이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을 K-IFRS 1109호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처분손익은 없게 되며 2010년에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조정하면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79,068백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방법을 K-IFRS 1039호에서 1109호로 변경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에는 처분과 관련된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의 매도가능평가손익에 집계되게 된다. 따라서 만약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K-IFRS 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자는 과거에 평가손익이 발생한 특정한 매도가능증권을 선별하여 처분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과거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방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5> 기준 변경 시(기준서 1039호에서 1109호로)의 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K-IFRS 1039호	K-IFRS 1109호
당기순이익	828,416	-
①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37,218	-
②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8,802)	-
기타포괄손익	(449,348)	379,068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449,348)	379,068
총포괄이익	379,068	379,068

9)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만 있고 지분상품의 처분으로 인한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 V. K-IFRS 1109호 적용 시 효과

### 5.1 K-IFRS 1039호(현행 규정)의 문제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K-IFRS 1039호와 1109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도가능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분류와 처분 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의 처리방법이다.

K-IFRS 1039호에서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K-IFRS 1109호에서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으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후속적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겠다는 취소불가능을 선택해야 한다. 즉, K-IFRS 1109호에서는 K-IFRS 1039호와는 다르게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취소불가능한 선택이 지분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상품이 아닌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겠다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즉,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K-IFRS 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K-IFRS 1039호에 비해 보다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IFRS 1039호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

액으로 계상한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 평가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이익)과 먼저 상계한 후 잔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으로 계상한다.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본항목에 계상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처분 시에도 평가손익잔액을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처분 시 평가이익잔액이 있을 경우 평가이익은 대변 잔액이므로 매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기하여야 하며 평가손실잔액이 있는 경우 평가손실은 차변잔액이므로 매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기하여야 한다. 즉, 처분손익은 수취한 대가에서 조정된 장부가액(장부가액±자본항목으로 인식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조정된 장부가액은 실질적으로 취득원가와 동일한 금액이다.

K-IFRS 1109호에서도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K-IFRS 1039호와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 즉,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 평가 전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이익)과 먼저 상계한 후 잔액을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로 계상한다.

그러나 K-IFRS 1109호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K-IFRS 1039호와는 다르게 취득시점 이후에 공정가치측정에 의하여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즉,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을 금융자산처분손익(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은 처분 시에도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자본항목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본의 분류 내에서 이익잉여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K-IFRS 1109호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먼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공정가치변동분을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한 후에 처분에 따른 금융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취득시점 이후의 공정가치변동을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누계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처분시점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면 직전 보고기간 말 이후 처분시점까지의 공정가치변동분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매각대금)에서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각수수료만큼 금융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행의 K-IFRS 1039호는 K-IFRS 1109호와 다르게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본항목에 계상된 평가손익을 처분손익에 반영하므로 과거에 공정가치평가로 인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이익을 처분 시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고 다시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므로 동일한 이익에 대해 기타포괄손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익에도 동시에 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K-IFRS 1039호의 규정은 앞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경영자가 과거에 이미 평가이익이 발생한 특정한 매도가능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선별적으로 처분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매도가능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할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쉽게 처분함으로써 처분손익

을 즉시 인식할 수 있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낮으며 거래비용도 다른 이익조정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영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 5.2 K-IFRS 1109호 적용 시 이익조정 억제효과

공정가치는 취득원가보다 현재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 채권자 등 회계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투자와 신용판단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보다 유용하다. 공정가치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미래 현금창출능력의 현재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을 일정시점에 매입하고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정이자율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이후에 시장이자율이 하락하였다면 당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상승하고 동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이 경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평가이익에 대한 정보는 경영자가 변동이자율로 채권에 투자한 경우보다 더 적절한 의사결정을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경영자가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투자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보고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한 성과인 평가손

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다른 항목에 보고하는 것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가치변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하여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시켜 나간다. 그러나 K-IFRS 1039호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되었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처분과 동시에 장부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선택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발생한 금융상품을 처분하고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당기손익을 높이는 이익거래(gain trading)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cherry-picking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익거래로 회계이익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분식회계가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IFRS 1109호에서는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그대로 둬으로써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과거에 인식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관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실현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면 기업의 순이익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K-IFRS 1109호에서는 비교적 장기간 보유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미실현 평가손익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당기손익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단지 자본의 다른 계정인 이익잉여금 등으로 재분류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K-IFRS 1039호에서 1109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인 처분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 cherry-picking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5.3 K-IFRS 1109호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쟁점들

#### 5.3.1 배당금

K-IFRS 1109호에서는 기업이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수 있다. 공정가치는 회계정보이용자에서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이 금융상품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비계약적 이익을 위해 일부를 보유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보다 잘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또한 회계정보이용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기 매매항목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공정가치의 변동과 투자로 인한 이익의 창출 등을 제외한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 매매항목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일부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관련 공정가치의 변동을 쉽게 식별하고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식 등과 같은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의 변동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또한 K-IFRS 1109호에서는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해당 계정과목에 그대로 둬으로써 cherry-picking을

통한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관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분상품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금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그 변동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배당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즉, K-IFRS 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이 매각되는 경우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상품의 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순환'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5.3.2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는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취득원가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및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K-IFRS 1039호에서는 예외적 원가법 적용규정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손상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K-IFRS 1109호와 같이 예외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공정가치측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과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이 장기간 보유된다면 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공정가치측정을 위해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비교가능성이 저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의 유용성은 6가지의 모든 질적특성(목적적합성, 충실한 표현,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검증가능한 금액이지만 목적적합성은 거의 없을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치평가에 사용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공정가치평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정가치가 주는 유용성의 증분 효과보다 증분적인 비용과 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내의 공정가치평가시스템을 기지고 있지 못하며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가 공정가치측정의 효익보다 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K-IFRS 1039호의 예외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면 개별 투자의 가치는 낮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개별적인 또는 합산된 투자의 규모가 중요하다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투자의 영향 때문에 공정가치의 증분 효익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원가보다 크게 된다.

### 5.3.3 재분류조정

K-IFRS 1039호에서는 지분상품의 제거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후속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즉,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구분하는 것을 통하여 기업의 성과는 모든 실

10) 손상차손은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을 이용하여 할인한 후 장부금액과 비교하므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손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손익은 한번만 인식해야 하며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K-IFRS 103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출되는 정보로 인한 효익이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를 초과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즉,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불가피하게 주관적이지만 회계정보이용자가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라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재무보고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류범주의 단순화, 단일 손상방법론 적용, 금융자산의 측정방법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규제중심적인 K-IFRS 1039호의 복잡한 금융자산 분류범주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자산에 단일의 손상방법론을 적용하거나 금융자산이 특정 방법으로 측정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 등이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분류 조정을 인정하는 않는 것은 회계처리의 단순화로 재무보고가 개선되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 및 신용시장의 기능과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어 회계정보이용자들은 원가를 초과하여 효익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5.3.4 비교가능성과 복잡성

K-IFRS 1109호에서 금융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외)은 회계목적상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기준'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기준'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기준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기준으로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K-IFRS 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의 분류범주의 개수를 줄이는 한편 금융자산을 특정 방법으로 측정하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공하여 금융자산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K-IFRS 1109호는 K-IFRS 1039호의 여러 범주(당기손익인식, 매도가능, 만기보유)를 대체하게 된다. 또한 K-IFRS 1109호는 금융자산의 측정속성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연계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의 평가를 위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K-IFRS 1109호는 K-IFRS 1039호와 다르게 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측정하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K-IFRS 1039호의 복잡성을 상당부분 감소시켜 회계정보이용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재무보고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기업 내에서 모든 금융상품이 하나의 속성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K-IFRS 1109호는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K-IFRS

1109호 하에서도 임의적인 구분 또는 경영진의 행위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측정이나 표시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K-IFRS 1109호는 오히려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를 중요시하여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K-IFRS 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한 두 기준인 사업모형(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계약상 현금흐름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외관상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또는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보유라는 경영진의 의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K-IFRS 1039호의 조건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에 기초한 K-IFRS 1109호의 조건이 경영진의 의도와 어떻게 유의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구별하기는 어렵다.

또한 K-IFRS 1109호는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소시키지만 그러한 감소는 미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업모형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때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도 무시되고 발행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밀한 검토 규정도 상당히 복잡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고려되지 않으며 기업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고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과 기초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와 관련된 신용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K-IFRS 1109호의 복잡성을 늘리며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VI. 요약 및 결론

K-IFRS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최대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K-IFRS의 도입에 따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평가는 확대될 것이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는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보다 금융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미실현 이익의 발생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금융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K-IFRS 1039호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투자목적의 금융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되었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처분과 동시에 장부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규정은 경영자가 자의적인 거래의 선택을 통해 과거에 평가손익이 발생한 특정한 매도가능증권을 선별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이익조정금액을 기간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K-IFRS 1109호에서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공정가치의 변동과 투자로 인한 이익의 창출 등을 제외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

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해당 계정과목에 그대로 뒀으로써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과거에 인식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다. 즉, K-IFRS 1109호에서는 금융상품을 통해 경영자의 재정적인 이익조정을 억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K-IFRS 1039호에 비해 이익조정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K-IFRS 1109호가 1039호에 비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사례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금융기관이 제조기업에 비해 금융상품의 보유량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분석의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현황을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규모가 자산대비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등이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경영자가 매도가능증권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행위를 했을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회계처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특정은행(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K-IFRS 1039호에서 단기매매증권과는 다르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평가손익이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미 평가이익이 발생한 특정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선별적으로 처분(cherry-picking)하고 매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증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쉽게 처분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과정에서 지

적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익조정수단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반해 K-IFRS 1109호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순이익에는 처분과 관련된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집계되어 경영자는 과거에 평가손익을 발생시킨 특정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처분손익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과거에 평가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킬 수 없게 된다.

효과적인 재무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편이 없고 투명하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높은 질의 회계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철저한 감사와 관련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더불어 공정가치정보가 투자자, 금융시장참여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의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실현이익이 발생한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이익거래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K-IFRS 1039호는 금융상품을 자의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경영자들의 이익조정과 분식회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K-IFRS 1109호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K-IFRS 1039호에서 1109호로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회계 상의 쟁점사항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분상품의 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그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즉, K-IFRS 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이 매각되는 경우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상품의 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일관성이 없다. 둘째,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공정가치측정을 위해 유의적

인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수반되는 비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접근법에 의해 기업의 성과는 모든 실현손익을 포함해야 하므로 재분류조정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K-IFRS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 모든 금융상품이 하나의 속성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나 임의적인 구분 또는 경영진의 행위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측정이나 표시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K-IFRS 1039호에서 1109호로 변경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영자들의 이익조정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김문태·김현아(2011), “매도가능증권의 이익거래와 이익 관리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9(2), 31-51.

김상철·백원선·이효익(2002), “유가증권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주가관련성,” **회계학연구** 27(2), 117-138.

권수영, 김문철, 김정국(1998), “증권회사상품평가손의 회계처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23(1), 25-49.

백원선·최길엽(201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재분류 조정을 이용한 이익조정,” **2011년 한국회계학회 발표논문**, 1-22.

송인만·노형식(2011),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송인만·박철우·양동훈(2000), “유가증권 시가정보의 유

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25(3), 1-24.

지현미·송인만(2009),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34(1), 1-26.

Barth, M. E.(1994), “Fair Value Accounting: Evidence from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Market Valuation of Books,” *The Accounting Review*, 69, 1-25.

Danbolt, Jo and William Rees(2007), “An Experiment in Fair Value Accounting: UK Investment Vehicles,” Working Paper.

Lee, Y. J., K. R. Petroni and M. Shen.(2006), “Cherry Picking, Disclosure Quality, and Comprehensive Income Reporting Choices: The Case of Property-Liability Insurer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6, 665-692.

Wyatt, A.(1991), “The SEC says: Mark to market,” *Accounting Horizons*(March), 80-84.

# Financial Institution's Earning Management Using Financial Instrument - Based on 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 -

ImMan Song\* · YeonHee Park\*\* · SungJin Park\*\*\*

## Abstract

The purpose of K-IFRS is to express economic substance of firm as faithfully so the introduction of K-IFRS will extend the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is useful information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executive officer to acquire and hold the financial instruments.

In addition, the fair value information provide size of future cash flows, time and uncertainties about financial assets, so fair value information can explain the intrinsic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better than other information. Therefore, unrealized gains on financial instruments can be very important information.

Based on the situation of fair value in financial institutions,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re low proportion compared to asset but gain on disposal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re high proportion compared to net income. So executive officer conducts earnings management by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nd the advantages of fair value may be impaired.

In this study, We analyze whether K-IFRS 1109 can prevent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with K-IFRS 1039 based on the representative of the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Kookmin Bank and Woori Ban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executive officer can do earning management and accounting fraud under the current rule, K-IFRS 1039. To prevent that, it is urgently needed to change from K-IFRS 1039 to 1109. It can be expected that earning management would be reduced under K-IFRS 1039 compared to K-IFRS 1039. But there are some issues that dividends recogniz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fair value measurement reliability and usability, recycling, comparability and accounting complexity if the introduction of K-IFRS 1109 is introduced.

Key Words: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Available-for-sale security, Earnings management

---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imsong@skku.edu)

\*\*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and Information Education School, Kongju University(parkyh@kongju.ac.kr)

\*\*\* Doctoral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gangclub2@hanmail.net)

## 〈Teaching Note〉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익조정 사례연구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중심으로 -

### I. 사례 개요(Synopsis):

#### 1. 본 사례의 목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현황을 살펴보고 매도가능증권이 자산대비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등이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가 매도가능증권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회계처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는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K-IFRS 1109호가 1039호에 비해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II. 강의 요점(Teaching point):

#### 1. 강의 대상

본 사례는 실무에 능숙한 글로벌비즈니스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경영학부 및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2. 교육 목표

현행의 K-IFRS 1039호는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분식회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K-IFRS 1109호로의 변경은 시급하며 K-IFRS 1109호는 K-IFRS 1039호에 비해 금융상품을 통한 자의적인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III. 토론 주제:

Q1: 공정가치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A: 공정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은 공정가치 정보가 역사적원가 등의 정보보다 주가를 보다 더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공정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 대표적인 연구로 Barth (1994)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인 장부가액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치정보는 역사적 원가에 비해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의 정보이용자는 취득원가보다는 공정가치의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현된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이 미실현된 유가증권의 처분손익보다

주가배수로 측정된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익 중 실현 또는 미실현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anbolt and Rees(2008)은 영국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가치와 역사적원가에 대한 가치적합성, 신뢰성 및 편의성 측면을 서로 비교하였다. 영국의 부동산투자회사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Danbolt and Rees(2008)은 공정가치가 보다 더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들의 예상과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순이익이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당기순이익보다 가치적합성, 신뢰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정가치의 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송인만 등(2000)의 연구가 있다. 송인만 등(2000)은 주식으로만 공시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정보가 주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주식으로만 공시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정보는 주가에 증분적인 설명력이 있었으며 주가수익률을 설명함에 있어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증분적인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만 등(2000)의 연구와 유사하게 김상철 등(2002)은 유가증권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간의 주가배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단기매매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간에 유의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간에 유의한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Q2: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는?

A: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상품의 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인 Wyatt(1991)은 자의적으로 매매이익이 발생하는 유가증권만을 선별하여 처분하고 매매손실이 발생하는 유가증권은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경영자들이 자산처분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로 Lee et al.(2006)은 유가증권의 선별적인 처분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기보다는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자본변동표에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의 존재를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의 경우 자본변동표 보다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포괄손익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경영자는 투자자의 관심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손익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또한 공시품질이 높을수록 포괄손익은 자본변동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것을 통해 포괄손익의 표시방법이 금융상품의 이익조정과 공시품질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금융상품의 자의적인 거래시점을 통한 이익조정을 검증한 국내연구로 권수영 등(1998)에 의하면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주식의 운용이 왜곡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증권회사들은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종목은 매각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왜곡된 주식 운용행태가 존재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현미와 송인만(2009)은 평가손익이 발생한 특정한 매도가능증권을 선별적으로 처분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증하였다. 평가손익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은 외부감사시 지적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도 낮아 다른 이익조정수단에 비해 경영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영자는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으로 보고이익으로 조정하며 이러한 이익조정은 만기보유증권, 유·무형자산, 리스자산 등의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Q3: K-IFRS 1039호의 금융자산의 분류는?**

A: K-IFRS 1039호에서의 금융자산이란 현금과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크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을 말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 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의미하며 기타금융자산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등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Q4: K-IFRS 1039호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는?**

A: 지분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후속적으로 지분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sup>11)</sup> 한편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평가손익을 재분류조정을 통해 당기손

익(금융자산처분이익)에 반영한다.

채무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은 만기보유금융자산과 지분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동일하다. 다만,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 또한 채무상품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본항목에 계상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재분류조정을 통하여 당기손익(금융자산처분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Q5: K-IFRS 1109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평가는?**

A: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즉,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자산이며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이 아니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였으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 제거일에 재측정된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Q6: K-IFRS 1109호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는?**

A: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

1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자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변동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측정치는 활성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으며 공정가치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채무상품인 경우에는 먼저 처분시점까지 이자수익을 인식한 후에 직전 이자지급일의 장부금액에 처분 일까지의 이자수익을 합한 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Q7: K-IFRS 1109호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는?

A: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

취득시점 이후의 공정가치측정에 의하여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은 처분시에도 제거되지 않고 계속 자본항목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본의 분류내에서 이익잉여금 등으로는 대체할 수 있다.

Q8: K-IFRS 1109호 도입시의 회계상 쟁점들은?

A: 첫째, 지분상품으로 취득하는 배당금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그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즉, K-IFRS 1109에서는 지분상품이 매각되는 경우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상품의 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둘째,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수반되는 비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접근법에 의해 기업의 성과는 모든 실현손익을 포함해야 하므로 재분류조정을 금지해서는 아니된다. 넷째, K-IFRS는 하나의 기업내에서 모든 금융상품이 하나의 속성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극대화할 수 있으나 임의적인 구분 또는 경영진의 행위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측정이나 표시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 IV. 과제

1. 국제회계기준을 기 도입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회계상 이슈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2.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해외의 금융기관들의 경험 및 사례를 찾아보자.